

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

※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사용검사, 정기검사, 정밀안전검사 : 20일 수시검사 : 30일
------	------	--
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소재지	전화번호

검사 종류	사용검사 [] 정기검사 [] 수시검사 [] 정밀안전검사 []
-------	--

주차장치	제작사	전화번호
	인증번호	명칭
	종류 및 방식	
	보수사	전화번호

설치장소

기계식주차장의 직전 검사일 또는 변경사항

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9제2항, 제19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, 제16조의26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(전문검사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) 귀하

첨부서류	사용검사	1. 와이어로프·체인 시험성적서 2. 전동기 시험성적서 3. 감속기 시험성적서 4. 제동기 시험성적서 5. 운반기 계량증명서 6. 주차장 현장설치 평면도(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※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	수수료
	정기검사	없음	「주차장법」 제19조 의11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의9에 따라
	법 제19조의9 제2항제3호가목의 수시검사	1.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, 운반기 및 철골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	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한 금액
	정밀안전검사	없음	

작성방법

-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- 기계식주차장치 제작자등이 법인인 경우 제작사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제작사, 인증번호, 명칭란에는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.
- 기계식주차장의 직전검사일 또는 변경사항란에는 정기검사·정밀안전검사의 경우 직전검사일, 수시검사의 경우 변경사항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승인	→	현장검사	→	결재	→	결과 통보
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		담당부서		담당부서		담당부서		담당부서		담당부서		